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524
----------	-----

2024. 3. 22.(금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동우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4년 3월 4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3월 6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3월 14일

-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동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미동산수목원의 다양한 이용 활성화 및 결혼 장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동산수목원 내에 결혼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수목원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제한에 대한 조문 정비 (안 제13조)
- 수목원 이용을 활성화하는 결혼식 장소 대여 규정 신설 (안 제13조의2)

3. 검토보고 요지 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- 안 제13조는 미동산수목원의 시설물 사용허가와 제한에 대한 조항의 자구 및 띄어쓰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- 안 제13조의2는 수목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결혼식 장소 대여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인정됨.

4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수목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.
 - 다만, 미동산수목원의 결혼식 장소 대여 사업 추진 시 사전 수요조사 및 시설운영 관리 방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행정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엿보임.
 - 사업추진에 선행하여 △수목원 결혼식에 대한 수요조사 △사업대상에 대한 선별기준 및 결혼식 장소 세부 운영·관리 방안 마련 △법률에 따른 ‘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’에 대한 대응책 강구 등에 관한 검토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6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7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

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 제목“(수목원과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제한)”을“(사용허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수목원과”를 “수목원 및”으로, “사용 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수목원과”를 “수목원 및”으로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수목원과”를 “수목원 및”으로, “[별지 제1호서식]을 작성하여 연구소장의”를 “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목원과”를 “연구소장은 수목원 및”으로, “각 호”를 “각 호의”로, “제한 할”을 “제한할”로 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수목원 이용 활성화 등 지원) ① 도지사는 수목원 이용을 활성화 하고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수목원 내 작은 결혼식 장소 지원
2. 결혼식 장소로 수목원 및 시설물 무상대여
3. 그 밖에 도지사가 수목원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절차·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수목원과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제한) ① 수목원과 시설물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·단체 등은 사전에 연구소장의 <u>사용 허가</u>를 받아야 한다.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② 수목원과 시설물의 사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<u>의한다</u>. 다만, 연구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수목원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[<u>별지 제1호서식</u>]을 작성하여 <u>연구소장의 허가</u>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④ 수목원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<u>각 호</u>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<u>제한</u>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<u>신 설</u>></p>	<p>제13조(사용허가 등) ① 수목원 및 ----- ----- ----- <u>사용허가</u>-----.</p> <p>② 수목원 및 ----- ----- -- <u>따른다</u>. ----- -----.</p> <p>③ 수목원 및 ----- ----- <u>별지 서식에 따른</u> <u>신청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</u> <u>여</u> -----.</p> <p>④ <u>연구소장은 수목원 및</u> ----- ----- <u>각 호의</u> ----- ----- <u>제한</u> <u>할</u>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의2(수목원 이용 활성화 등 지원) ① <u>도지사는 수목원 이용</u> <u>을 활성화하고 결혼을 장려하는</u></p>

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
있다.

1. 수목원 내 작은 결혼식 장소
지원

2. 결혼식 장소로 수목원 및 시
설물 무상대여

3. 그 밖에 도지사가 수목원 이
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원
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
절차·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
사가 따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의 이용 활성화 및 결혼 장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동산수목원 내에 결혼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일부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, 이번 개정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○ 작성자 :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은